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벌채 시 일정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벌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

차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별표 1](#)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종묘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3을 부과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체(안 제23조의3 신설)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이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안 제31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안 제42조의2 [신설](#))

친환경벌채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을 규정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경감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 ~ 10. 13., 2023. 3. 31. ~ 5.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관리업무대행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관리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 또는 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제25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수집·활용) ① 산림

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임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임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임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

환경별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별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일할계산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입목별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규모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2조의4(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

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산사태·숲가꾸기·벌채·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바람·비·눈·지진·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6(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제42조의7(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산림경영·산림자원조성·산림재해·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의8(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7항”을 “법 제3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 제71조제6항제2호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중전의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를 “산림사업의 종류 중 어느 하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중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을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의 자본금 기준금액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동시에 등록하려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어느 하나의 산림사업 종류에서 요구되는 기술자를 갖추었으면 해당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의 자본금 기준금액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 중 어느 하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⑤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2 관련)

1. 업무정지기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0.13$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u><신 설></u>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 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 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 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 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
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
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행·위탁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
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
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
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
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신 설>

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관리업무대행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
 관리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
 또는 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별표 1의2-----.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
 축·운영 및 정보수집·활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
 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
 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
 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
목벌채등) ① (생 략)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
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
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
목벌채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6조제5항-----

-----.

1. ~ 4.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
항에 따라 생태 · 경관 · 재해위
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
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
다)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
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
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
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

(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
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

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
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신 설>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일할계산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규모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신 설>

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

제42조의4(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산사태·숲가꾸기·벌채·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바람·비·눈·지진·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

<신 설>

<신 설>

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
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
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
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
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
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6(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의 보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
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별
채등의 사업계획서

<신 설>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별
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제42조의7(입목별채등의 심의위
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별채등의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별채등의 면적이 20만제
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별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
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
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
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 소
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
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의 부단체장(부시장 또는 부
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를 말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산림경영·산림자원조성·산
림재해·산림생태 등 산림 분
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
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
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
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

람

4. 그 밖에 산림·환경 분야에
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신 설>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의8(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

같다.

1. ~ 6. (생략)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

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
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
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
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
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
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
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
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9. (생략)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
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④·⑤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

-- 같은 법 제15조·제15조

의2제4항-----

8.·9.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

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

한 권한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2. <u>법 제36조제4항</u>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⑦ (생략)	⑥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36조제5항</u>----- ----- ----- -----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181